

행정안전부령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연 월 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현안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교부대상 사업을 현재 열거 방식에서 지원 제한 대상 외의 모든 사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여 특별교부세 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근거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용어를 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교부세 교부대상 확대(별표8)

- 1) 특별교부세의 목적, 취지 및 법령상 제한할 필요가 있는 사업만 제한하고, 이외의 사업은 특별한 제한 없이 교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2호 라목에 “그 밖의 주요사업” 신설

나. 근거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용어 개정(별표8)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용어에 맞게 ‘재난주관관리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별 산정항목 및 교부기준 등(제10조 관련)

교부대상	산정항목	교부기준 및 대상사업
1. 법 제9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가. 도로·교통사업	[교부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관리하는 도로·교통사업 중 해당 연도에 특별히 시행해야 할 사유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교부대상의 적정성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교부대상] ① 주거환경 개선, 도로 정비 등 도로 관련 사업 ② 교통체증이 심각한 지역 정비 등 교통 관련 사업
	나. 상하수도사업 및 하천관리사업	[교부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관리하는 상수도·하수도·간이상수도사업 및 하천관리사업 중 해당 연도에 특별히 시행해야 할 사유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교부대상의 적정성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교부대상] ① 비상 급수, 고지대 급수 등 상수도 설치사업 ② 하수도 설치사업 ③ 하천의 개수(改修)·복개(覆蓋) 등 하천관리사업
	다. 사회복지사업	[교부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사회복지사업 중 해당 연도에 특별히 시행해야 할 사유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교부대상의 적정성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교부대상] ① 노인·장애인·청소년·아동 등 관련 각종 사회복지사업 ② 보건소시설 기능 보강 등 보건위생사업
	라. 농업·수산진흥사업	[교부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관리하는 농업·수산 진흥사업 중 해당 연도에 특별히 시행해야 할 사유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교부대상의 적정성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교부대상] ① 농산물 저장 및 유통 관련 시설사업 등 농업진흥사업 ② 수산물 저장·유통 및 선착장 등 수산진흥사업
	마. 문화예술 및 체육사업	[교부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관리하는 문화·예술·체육사업 중 해당 연도에 특별히 시행해야 할 사유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교부대상의 적정성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교부대상] ① 문예회관, 예술회관, 도서관 등 문화예술사업 ② 공공체육시설, 체육공원 등 체육사업
	바. 도시개발 및 환경 사업	[교부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관리 및 추진하는 도시개발·환경사업 중 해당 연도에 특별히 시행해야 할 사유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교부대상의 적정성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교부대상] ① 도시공원 조성관리사업 및 택지개발 연계사업 등 도시개발사업 ② 환경오염 방지, 오수·쓰레기 처리시설 등 환경사업
	사. 그 밖의 주요 사업	[교부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그 밖의 주요 사업의 소요액 중 지방비 부담액이 너무 많아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소요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 교부세	가. 응급복구 사업	[교부기준] 태풍·홍수·폭설·폭풍·해일·지진 또는 가뭄 등 각종 재난으로 법령에 따른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에 긴급한 재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소요경비를 심사하여 확정된 금액.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응급대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없더라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나. 항구복구 사업	[교부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항구적인 복구 대책을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난관리주관기관)가 확정된 복구 소요액 중 지방비 부담액이 많은 경우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교부금액 = 지방비 소요액 × 부담금 비율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을
	다. 재난 및 안전 관리 사업	[교부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급히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지방비 소요액의 일부에 대하여 적정성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확정된 금액
	<u>라. 그 밖의 주요 사업</u>	[교부기준] <u>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그 밖의 주요 사업의 소요액 중 지방비 부담액이 너무 많아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소요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3. 법 제9조 제1항제3호에 따른	가. 지역경제 활성화시책	[교부기준]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국가(행정안전부) 및 지역단위의 주요 역점시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 재정여건 등을 종합

특별교부세		적으로 고려하여 소요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교부대상] ① 전통시장 활성화, 읍·면 중심지 주차장 조성 사업 ② 지방기업 및 지역산업 인프라 구축사업 ③ 그 밖의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
	나. 주민생활안정 시책	[교부기준] 주민생활안정 관련 국가(행정안전부) 및 지역단위의 주요 역점 시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소요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교부대상] ①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② 주민 생활불편해소사업 ③ 그 밖의 주민생활 안정 관련 사업
	다. 지방행정기 능 강화 시 책	[교부기준] 지방행정기능 강화 관련 국가(행정안전부) 및 지역단위의 주요 역점시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 재정여건 등을 중 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요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교부대상] 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② 상수도 관리 효율화 사업 ③ 그 밖의 지방행정기능강화 사업
	라. 행정구역 개편수요	[교부기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종류가 바뀔에 따라 행정시설·장비·전산망 등의 조속한 확보나 지역 의 균형 발전을 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준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교부대상] ① 시·군이 통합되는 경우: 통합되는 시·군당 50억원 ② 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는 경우: 자치구 수 × 10억원 ③ 군이 시로 승격되는 경우: 신설 시당 15억원
	마. 국가적 행사 관련 시책	[교부기준] 전국체전 등 국가적 행사가 개최되는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장 개 수·보수 및 도시환경정비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이와 관련 한 사업을 심사하고 지방비 소요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교부대상] ① 전국체전, 소년·장애인 체전 ② 국가 유치 국제체육대회 ③ 그 밖의 국가적 주요 행사 등
	바. 우수지방 자치단체 재정지원	(1) 정부합동평가 등 우수 지방자치단체 지원 [교부기준] 정부합동평가 및 행정안전부 자체평가 결과 행정혁신·대

		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 교부금액 = 사업비 소요액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율
	사. 그 밖의 주요 시책	[교부기준] 국가(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그 밖의 주요 시책 사업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사하여 소요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삭제 <2014.4.28>		